함께 약속 행복한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권리장전-기업용

2022.4

사업주훈련 참여기업이 알아야 할 4가지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KSQA KOREA 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환급과정)이라고도 하며, 실시 주체에 따라 사업주 자체훈련과 사업주 위탁훈련으로, 실시 방법에 따라 집체, 현장, 원격훈련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주 훈련의 대상은?

사업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로 구분되며, 사업주는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고용보험 취득 예정자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채용예정자 사업장에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업주 자체훈련 VS 위탁훈련

사업주 자체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으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장점 기업이 훈련내용, 훈련일정, 훈련시간, 훈련장소 등을 직접 계획하여, 기업에 특화된 훈련과정을 수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기업이 훈련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훈련교강사, 훈련장소, 훈련장비, 훈련시간표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하며, 과정인정 신청(훈련실시 장소 기준 관할 지부지사),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등 행정처리를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훈련운영을 위한 HRD 담당자 배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를 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장점 기업이 훈련에 필요한 제반 여건(장소, 장비, 시간,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탁 훈련기관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기업이 아닌 훈련기관에서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므로, 위탁계약을 맺을 훈련기관의 훈련운영 역량 및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내용, 훈련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 위탁훈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에 한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01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NO! 훈련목적에 맞는 훈련 YES!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무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시신고한 훈련시간을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등 인정받은 훈련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 5대 법정 교육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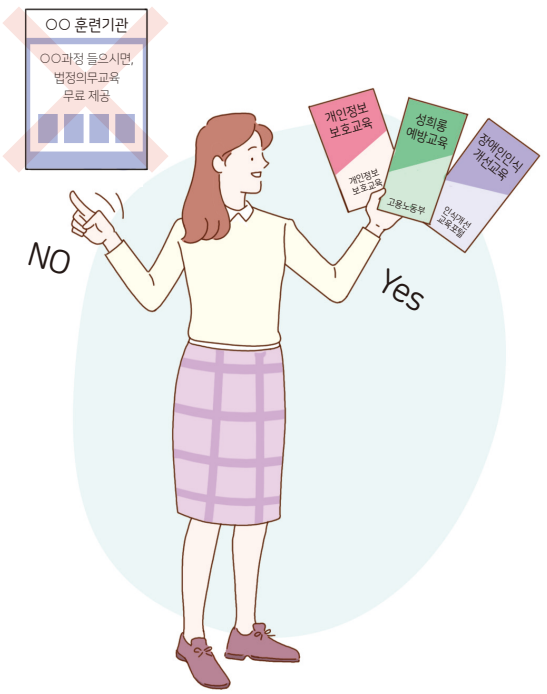

5대 법정 교육은 기업 내부 직원(관련자격 보유자)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정 교육 수료증을 무료로 발급해 준다며 불필요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유도하는 원격훈련기관에 주의해 주세요.

자체교육 관련 규정

①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해당 없음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규정 및 교육 기준

①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는 분기별 1회(3~6시간 이상) 들어야 하며, 관리감독자도 연간 16시간 이상 수료(미 이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육 및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8443)
- 사업주 자체교육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을 통한 유료 위탁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모든 기업 필수 교육(미 이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육 및 문의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홈페이지 접속 후 "성희롱예방교육" 검색
- 사업장 소속 내부 근로자를 통한 자체교육 가능

③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4항]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 모든 기업 필수 교육(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 교육 및 문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홈페이지 내 무료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 모든 기업 필수 교육(미 이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교육 및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교육포털(www.kead.or.kr)
- 사업장 소속 내부 근로자를 통한 자체교육 및 교육 강사 무료 지원
- 홈페이지 내 교육 수료 후 교육결과 등록

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미 이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pension.kcomwel.or.kr)
- 사업장 소속 내부 근로자를 통한 자체교육 가능

※ 위 내용은 '21년 8월 현재 기준이므로, 규정 등 내용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부정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업체를 유의하세요!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훈련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허위로 훈련비를 지원받아 ISO인증 등 사업 관련 컨설팅을 받으라며 접근하는 컨설팅 업체를 주의하세요.

기업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 허위로 사업주 훈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04 훈련비 리베이트, 요청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리베이트(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제공 등)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탁훈련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원격훈련기관을 주의하세요. 리베이트를 제공한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기업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관련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등)

여기서 잠깐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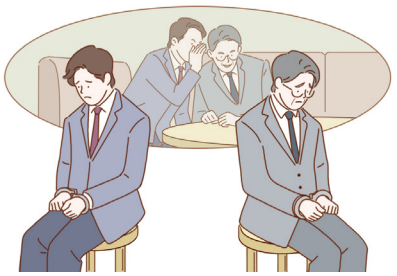

2020년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이에 소속된 개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경우 그 행위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업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하여 주의와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관련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5(양벌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기업/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자체훈련),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위탁훈련)
· 신청기간
- 훈련시작 5일 전까지(자체), 훈련시작 7일 전까지(위탁-기업맞춤형)
- 위탁 훈련 중 통합심사 대상 훈련과정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훈련과정 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자체훈련),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위탁훈련)

훈련과정 인정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기업/훈련기관

훈련실시 신고
기업/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실시신고 신고기한: 훈련개시 전까지(기업대학의 경우 훈련개시 후 30일 이내)

훈련수료 보고
기업/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신청방법: 온라인 보고

지원금 신청
기업/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 신청기한: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금 지급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 → 기업/훈련기관

문의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 hrdkorea.or.kr
1644-8000
· 훈련과정 인정
· 실시신고 접수 및 수료자 확정
· 비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
· 훈련과정 모니터링

전국 고용센터
@ www. moel.go.kr
1350
· HRD-Net 사용인증
· 지정 훈련시설 인·지정
· HRD-Net 회원가입 승인
· 훈련과정 지도·점검
·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징수
· 부정훈련 신고접수

한국고용정보원
@ www. hrd.go.kr
1577-7114
· HRD-Ne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www. ksqa.or.kr 1644-5113
· 훈련기관 인증평가(위탁훈련기관)
· 통합과정 심사 및 특화과정 심사
· 원격훈련과정심사(인터넷/스마트/우편)
· 부정훈련 신고접수

근로복지공단
@ www. kcomwel.or.kr 1588-0075
· 기업규모 결정(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